

관제 기부문화 부활하는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간공익재단의 의견-

1.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참삭 가필/ 삭제/ 누군가가 무서워 이단어
삭제 등등 어떠한 것도 가능합니다
2. 오늘 중으로 내부결의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최근 손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복수의 민간전문모금기관을 통해 국민의 기부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모금시장 활성화 및 우리 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민간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기부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와 기부금품의 사용과 관련 민간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그동안 이룩한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의 발전정도와 국제적인 흐름과는 다르게 민간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과거 정부통제와 관치의 시대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법 개정의 발상자체가 시대 착오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1.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발전한 기부문화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정부가 전문모금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모금시장 활성화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전문모금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의 모금활동에 대하여 모금기관 지정, 관리 및 감독, 지정취소, 사업평가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의 모금활동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장과 민간의 활동에 저촉되는 각종 규제들을 개혁하고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거 민간단체의 모금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와 통제 일변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과 더불어 이웃돕기 성금사업 이양과 과거 대표적 악법으로 지적되었던 '기부금품 모집규제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근래에 개정하는 등의 노력과는 상반되게 정부가 그동안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발전한 기부문화를 다시 과거로 퇴행시키는 시대착오적 발상인 것이다.

2. 정부가 기부자와 배분사업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통제하면서 특정 부처의 재정을 민간재원에 의존하고자 하는 의도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문모금기관을 통해 모금된 기업과 시민의 기부금의 배분을 정부의 주도하에 조직되고 운영되는 전문모금기관협회에 의해 조정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기부금의 배분과 지원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의사와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주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나눔으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의 기부금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환경, 여성, 지역사회 개발, 제3세계 지원, 다문화, 문화예술, 각종 공익활동 등 단순히 사회복지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서 나열한 것처럼 수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조성된 성금이 주로 사회복지분야에만 한정하여 사용된다는 문제점이 민간에서 지적되어 왔는데 정부의 특정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업과 선량한 시민들의 성금에 대해 배분과 지원사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정부가 사회복지재정을 민간 재원에 의존하고자 하는 의도를 공식화하면서 정부가 우리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3.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기부문화의 구조적 획일화가 우려된다.

전문모금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사회를 포함한 사무국 구성과 운영,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을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여 이를 정부가 관리감독 하는 구조로 매우 획일적이고 일방적이며 이는 모금조직의 운영의 다양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접근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모금단체들이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금단체의 설립 취지와 운영 철학 그리고 기관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고유의 모금과 배분방식을 폐기처분하고 정부의 요구대로 따라야 한다는 매우 행정편의적이고 모금과 배분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물이해에 근거한 발상이고 비현실적이다. 진정으로 기부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운영 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인데 전문모금기관에 획일화된 구조와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의 협조보다는 반발을 불러일으켜 결국 기부문화를 저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요구한다.

36122422
2224823

일반적으로 법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절차에 있어서 시민사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수렴과 특별히 법률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될 이해당사자인 각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토론회나 공청회 등 최소한의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그 저의를 의심받게 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서둘러 처리하거나 일방적인 집단의 주장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추진하는 독선적인 방식을 버리고 민주국가의 운영원리인 시민사회와 전문가 그리고 이해당사자 더 나아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가진 문제점과 개선안을 검토한 후에 존치 또는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무엇보다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철저한 자기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특별법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에 힘입어 한해 3000억에 육박하는 모금성과를 달성하는 등 외형적으로 괄목할만한 모금성과를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성금배분의 공정성, 다양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심지어는 성금배분과 관련된 잡음과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자주 거론될 정도로 조직운영의 폐쇄성,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을 계기로 자기혁신과 변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기부자와 다양한 현장단체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성숙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분명히 요구한다.

현시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는 법의 개정과 정부의 직접적

인 개입을 통해 제2, 제3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해결된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철저한 자기 혁신과 정부를 비롯 기부자와 배분처와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 각종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형성된 민간재원을 정부의 통제를 통해 사용처를 정하고 인부를 복지예산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은 기부문화와 관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혼동하는 것이다.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민간단체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부의 개입과 통제는 결국 그동안 발전된 기부문화를 미성숙한 과거시대로 퇴행시키는 것이며 확인화된 관계기부 문화를 구조적으로 양산하여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인하는 기부문화를 성숙시키기 보다는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간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형성되는 기부문화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공익을 실현하는 자율적 선순환 구조를 뿌리째 흔들고 마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활동이 보다 건강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민간단체를 비롯 기업과 정부와의 대화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시급히 모금시장의 활성화와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저해요인들을 찾아 없애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